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2019. 5. 28.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목 차

I. 결산검사 의견서	1
II. 결산검사 결과 요약	3
1. 세입·세출결산	3
2. 기금의 결산	5
3. 재무제표	6
4. 채권·채무결산	6
5. 재산의 결산	7
6. 금고의 결산	8
7. 성과보고서	9
III. 개선 및 권고사항	10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10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6
3. 기금에 관한 사항	49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53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57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I. 결산검사 의견서

부산광역시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5월 14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부산광역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함께 확인하여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 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정 종 민	
위원	김 정 량	
위원	고 대 영	
위원	선 종 민	
위원	정 태 윤	
위원	성 창 홍	
위원	양 은 진	
위원	선 근 우	
위원	홍 부 국	
위원	송 재 호	

II. 결산검사 결과 요약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1,998,152	12,057,283	11,252,494	417,764 (56,389)	19,808	367,217
일반회계	9,141,496	9,142,356	8,740,233	221,713 (47,072)	19,572	160,838
공 기 업 특별회계	879,859	906,206	645,792	156,182 (0)		104,232
기 타 특별회계	1,976,797	2,008,721	1,866,469	39,869 (9,317)	236	102,147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나. 세입결산

2018회계연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1,998,152	12,313,396	378,522 (3.1)	12,057,283 (97.9)	34,233 (0.3)	221,880 (1.8)
일반회계	9,141,496	9,345,215	373,048 (4.0)	9,142,356 (97.8)	33,806 (0.4)	169,053 (1.8)
공 기 업 특별회계	879,859	918,182	2,130 (0.2)	906,206 (98.7)	278 (0.0)	11,698 (1.3)
기 타 특별회계	1,976,797	2,049,999	3,344 (0.2)	2,008,721 (98.0)	149 (0.0)	41,129 (2.0)

※ ()내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다. 세출결산

2018회계연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1,513,111	11,998,152	11,252,494 (93.8)	474,153 (4.0)	17,059 (0.1)	254,446 (2.1)
일반회계	8,797,263	9,141,496	8,740,233 (95.6)	268,785 (2.9)	16,823 (0.2)	115,655 (1.3)
공 기 업 특별회계	776,215	879,859	645,792 (73.4)	156,182 (17.7)		77,885 (8.9)
기 타 특별회계	1,939,633	1,976,797	1,866,469 (94.4)	49,186 (2.5)	236 (0.0)	60,906 (3.1)

※ ()내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비율

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2,057,283	11,252,494	804,789	417,764 (56,389)	19,808	367,217
일반회계	9,142,356	8,740,233	402,123	221,713 (47,072)	19,572	160,838
공 기 업 특별회계	906,206	645,792	260,414	156,182 (0)		104,232
기 타 특별회계	2,008,721	1,866,469	142,252	39,869 (9,317)	236	102,147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2. 기금의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 번	구 분 기금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1,053,491	-508	712,758	713,266	1,052,983
1	통 합 관 리 기 금	1,097	151	402,130	401,978	1,248
2	지 방 채 상 환 기 금	1,919	175	42,865	42,690	2,094
3	대 학 및 지 역 인 재 육 성 기 금	4,679	-2,093	825	2,918	2,586
4	집 단 에 너 지 시 설 기 금	23,602	2,847	2,848	1	26,449
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15,893	30,000	55,135	25,135	145,893
6	투 자 진 흥 기 금	144,696	28,792	31,975	3,183	173,488
7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6,309	113	114	1	6,422
8	사 회 복 지 기 금	13,080	-2,834	900	3,734	10,246
9	재 해 구 호 기 금	127,984	2,044	2,461	417	130,028
10	식 품 진 흥 기 금	14,711	-1,431	2,030	3,460	13,280
11	환 경 보 전 기 금	13,045	878	8,709	7,831	13,923
12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881	-78	2,770	2,848	803
13	재 난 관 리 기 금	84,369	-4,623	34,722	39,346	79,746
14	도 시 ·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152,826	3,023	13,690	10,667	155,849
15	출 산 장 려 및 양 성 평 등 기 금	99,860	64	12,961	12,897	99,924
16	문 화 진 흥 기 금	97,305	3,280	3,879	599	100,585
17	체 육 진 흥 기 금	58,014	-847	3,476	4,323	57,167
18	지 역 개 발 기 금	93,221	-59,969	91,268	151,238	33,252

3.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결과
2018년	45,064,520	4,006,595	41,057,925	9,363,698	9,548,806	-185,108
2017년	44,223,858	3,783,791	40,440,067	8,739,481	9,184,805	-445,324
증감	840,662	222,804	617,858	624,217	364,001	260,216

4. 채권·채무결산

가. 채권

채권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합 계			131,844	32,114	58,282	105,676	2,994
일반회계			61,565	6,367	11,658	56,274	2,994
특별회계	소계		121	110	100	131	
	공기업특별회계		21			21	
	기타특별회계		100	110	100	110	
기금	소계		70,158	25,637	46,524	49,271	
	중소기업육성		59,364	21,755	41,775	39,344	
	투자진흥		4,000	1,043	2,043	3,000	
	사회복지		930	560	820	670	
	식품진흥		5,864	2,279	1,886	6,257	

나. 채무

채무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B)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D)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565,464	△13,417	656,309	669,726	-	2,552,047
지 방 채 증 권	1,789,573	182,408	507,409	325,001	-	1,971,981
차 입 금	775,891	△215,225	129,500	344,725	-	560,666
채무부담행위	0	19,400	19,400	0	-	19,400

※ 당해연도말 현재액(D) = 전년도말 현재액(A) + 당해연도 증감액(B) + 조정액(C)

5. 재산의 결산

가. 공유재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용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25,969,503	1,136,450	2,001,854	865,404	27,105,953
행정 재산	소 계	25,359,491	1,264,820	1,984,675	719,855	26,624,311
	공 용 재 산	10,341,293	476,333	537,609	61,276	10,817,626
	공 공 용 재 산	14,066,929	769,596	1,422,923	653,327	14,836,525
	기 업 용 재 산	877,229	20,308	24,143	3,835	897,537
	보 존 용 재 산	74,039	-1,417	0	1,417	72,622
일 반 재 산		610,012	-128,370	17,179	145,549	481,642

나. 물품

2018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의 취득·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점, 백만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4,785	105,540	350	10,258	183	5,374	167	4,884	4,952	110,424

※ 작성대상 물품 : 57개 정수물품(51종 정수물품 보유)

※ 미보유 정수물품 : 살수차, 가드레일 청소차, 제설차, 칼썬살포차, 도로 보수차, 분무기탑재차 등 6종

6. 금고의 결산

2018회계연도 금고의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1)-(2)	수입액(1)	지출액(2)	
합계(A+B+C)	1,824,183	33,589	11,999,349	11,965,760	1,857,772
일반회계소계(A)	510,970	-108,847	8,631,386	8,740,233	402,123
특별회계소계(B)	259,722	142,944	2,655,205	2,512,261	402,666
공 기 업	142,661	117,753	763,545	645,792	260,414
기 타	117,061	25,191	1,891,660	1,866,469	142,252
기 금 소 계 (C)	1,053,491	-508	712,758	713,266	1,052,983

7. 성과보고서

부산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회계년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현년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26	210	413	65	303	45	10,606,701	7,436,637	3,170,064

※ ‘초과달성’ 이란 목표대비 130%이상 달성, ‘달성’ 이란 100%-130% 달성,
‘미달성’ 이란 100%미만의 달성도를 보인 경우로 구분

Ⅲ. 개선 및 권고사항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

(1)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징수 결정액	미수 납액	비율
지방세									
보통세	3,565,583	61,898	1.7%	3,627,122	53,270	1.5%	3,354,487	55,081	1.6%
목적세	520,923	12,300	2.4%	517,874	11,860	2.3%	524,216	12,391	2.4%
지난년도 수입	110,478	73,506	66.5%	122,478	69,283	56.6%	131,794	67,006	50.8%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2,474	196	7.9%	1,881	3	0.2%	3,211	7	0.2%
사용료 수입	65,269	2,000	3.1%	65,112	1,995	3.1%	57,672	2,047	3.5%
수수료 수입	24,908	105	0.4%	24,830	29	0.1%	12,622	5	0.0%
이자수입	9,631	8	0.1%	13,109	74	0.6%	8,849	-30	-0.3%
자산매각 수입	12,586	-	0.0%	12,569	-	0.0%	20,541	1,693	8.2%
부담금	3,991	7	0.2%	37,497	5,031	13.4%	48,335	604	1.2%
과징금및 과태료등	4,534	1,261	27.8%	4,875	1,967	40.3%	4,965	1,505	30.3%
기타수입	111,340	5,490	4.9%	91,438	1,157	1.3%	82,346	2,388	2.9%
지난연도 수입	22,076	12,204	55.3%	16,634	12,775	76.8%	14,701	9,732	66.2%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지방세는 13,291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1,760백만원 감소하여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은 11,531백만원(7%)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도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당회계연도 미수납액 증가 원인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무재산	29,971	20.29%	31,307	23.29%	29,835	22.19%
행방불명	9,324	6.31%	3,534	2.63%	4,993	3.71%
납세태만	31,172	21.10%	32,435	24.13%	25,746	19.15%
징수유예	1,607	1.09%	1,282	0.95%	1,533	1.14%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338	0.91%	4,948	3.68%	60,355	44.88%
폐업또는부도	8,961	6.07%	5,692	4.23%	0	0.00%
자금압박	45,808	31.01%	39,127	29.11%	0	0.00%
기 타	19,523	13.22%	16,088	11.97%	12,013	8.93%
합 계	147,704	100.00%	134,413	100.00%	134,475	100.00%

2018년도 회계연도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원인분석 결과 자금압박, 납세태만, 무재산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에서 볼수 있듯이 자금압박, 납세태만, 무재산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압박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존재하나, 납세태만도 전기부터 2순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수행하여 주시고,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입 수금에 관한 사항(일반사항)

1) 현황

현재 각종 세금 납입 및 부산시에 입금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기한내에 각종 금융기관으로 납부를 실시하고,
 #2 금융기관은 해당 입금 내역을 일일 집계 비교 대사를 수행하고 일정 기일 지난 후 부산시로 금액을 이체 시키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은행의 경우에는 7영업일 이후 이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납매체별 자금 이체현황

수납매체	주요 수납 매체
은행	은행 창구, 가상계좌, 무인수납기 단순 납부 (수납일자 포함 7영업일)
우체국	우체국 창구 (일주일분 취합 그 주의 마지막 날로부터 7영업일 후)

수납매체	주요 수납 매체
금융결제원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무인수납기, 조회 납부, 간단e-납부 (수납일자 포함 8영업일 후)
이텍스카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카드 납부 (전월 1개월분 취합 익월 13일)
위텍스카드	위텍스를 통한 카드 납부 (전월 1개월분 취합 익월 12일 집금하여 그 다음 영업일)

2) 개선 및 권고사항

과거 전산이 발달되지 못한 환경에서는 수납은행이 수납자료의 집계 및 확인등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전산이 발달함에 따라 자료 집계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적용되어오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해당금융기관에서 다시 부산시로 이체되기까지 최소 7영업일(주말을 포함 할 경우 최장11일)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기간이자에 대한 수입을 부산시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부산시로 이체하는 기일을 조정하여 부산시 세입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위탁관리 비용 정산 건

1) 현황

부산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3년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30일 /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30일을 정산기간으로 정하여 다음년도 1월 31일 까지 부산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해당 보고를 받은

후 세부내역에 대한 증빙 확인을 마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에 대하여 세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과 세출금액에 대하여 상계를 실시하여 순액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투명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세입금액을 총액으로 인식하고, 위탁관리수수료는 별도로 세출금액으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권고 드립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세기간과 불일치되어 회계기간의 귀속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추후 재계약할 경우 회계기간과 일치하도록 고려하여 계약을 하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나.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1) 세출결산 총괄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최근 5년간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A)	9,141,496	8,761,656	8,444,467	8,051,095	7,261,419
세출결산액	8,740,233	8,342,800	7,992,880	7,554,277	6,861,267
이 월 액(B)	268,785	344,233	331,646	352,427	316,786
증감액	-75,448	12,587	-20,781	35,641	121,592
비 율(B/A)	2.94%	3.92%	3.93%	4.38%	4.36%
보조금반납금(C)	16,823	2,176	8,539	3,609	2,305
증감액	14,647	-6,363	4,930	1,304	-3,099
비 율(C/A)	0.18%	0.02%	0.10%	0.04%	0.03%
집행잔액(D)	115,655	72,447	111,402	140,782	81,061
증감액	43,208	-38,955	-29,380	59,721	12,709
비 율(D/A)	1.26%	0.82%	1.31%	1.74%	1.11%
계(E=B+C+D)	401,263	418,856	451,587	496,818	400,152
비율((E)/A)	4.38%	4.78%	5.35%	6.17%	5.51%
순세계잉여금	160,838	188,884	279,265	475,751	317,045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79,840백만원(4.33%)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97,433백만원(4.7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예산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당초예산		8,373,620	7,746,803	7,591,397
제1회 추경예산	증감	55,486	577,630	361,121
	계	8,429,106	8,324,433	7,952,518
제2회 추경예산	증감	450,421	76,800	111,278
	계	8,879,527	8,401,233	8,063,796
제3회 추경예산	증감	-87,022	-	-
	계	8,792,505	-	-
간주예산	증감	4,757	28,778	28,244
	계	8,797,262	8,430,011	8,092,040
최종예산		8,797,262	8,430,011	8,092,040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105.05%	108.81%	106.59%

회계연도별로 매년 3회 이상으로 당초예산의 변경이 있으며, 매년 최종예산
은 당초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별로 예산액의 흐름을 보면 당초 예산의 편성시 일정규모의 예
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세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2회 이상의 추경
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의 편성시에
충분한 당년도의 세입 및 세출의 예상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에 추경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시 각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투자(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바, 이때 당해연도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진행과정 및 투자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세출과 그와 관련된 필요한 세입을 예상하여 편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연간 필요한 자금의 일부만 당초예산의 세출로 편성하고 이후에 자금이 확보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출을 추가 편성하는 방식이라면, 일부의 사업은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중단 및 보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의 편성시 연간 사업별 필요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투자(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후의 추가경정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도별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의 철저한 편성으로 예산편성의 유동성을 최소화하여야 세입과 세출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명시이월	122,271	162,838	184,153	232,297	238,682
증감액	-40,567	-21,315	-48,144	-6,385	94,323
사고이월	100,460	140,901	120,820	93,527	62,632
증감액	-40,441	20,081	27,293	30,895	24,961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계속비이월	46,054	40,494	26,673	26,603	15,472
증감액	5,560	13,821	70	11,131	2,308
합 계	268,785	344,233	331,646	352,427	316,786
증감액	-75,448	12,587	-20,781	35,641	121,592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40,567백만원 및 40,441백만원 감소하였고, 계속비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5,56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건수 및 자금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년(A)			2017 년(B)			증감(A-B)		
	건수	자금	자금없는	건수	자금	자금없는	건수	자금	자금없는
명시	110	100,771	21,500	102	145,838	17,000	8	-45,067	4,500
사고	125	98,321	2,139	152	135,577	5,324	-27	-37,256	-3,185
계속비	4	22,621	23,433	4	38,494	2,000	-	-15,873	21,433
합계	239	221,713	47,072	258	319,909	24,324	-19	-98,196	22,748

당년도에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자금을 수반하는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며, 전기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의 비율이 7.06%이나 당기에는 17.5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없는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의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발생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발생건수는 변동 없고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내용은 문전교차로 지하차도건설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산물제조가공 지원사업 등이며, 사고이월의 주요내용은 산성터널(화명측)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도시 BRT 사업, 지역투자촉진사업,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이전사업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공사,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공사,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사업,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유
교육협력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직접)	26,393	6,100	11,024	절대공기 부족
지역균형개발과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	23,226	-	1,195	절대공기 부족
도로계획과	산성터널(화명측)접속도로 건설	37,438	-	1,145	보상협의 지연
도로계획과	전포로 확장	14,819	4,791	-	보상협의 지연
수자원관리과	생태하천복원사업(감전천)	15,998	4,685	-	장기계속공사로 준공
수자원관리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동천수질개선)	16,349	6,040	-	준공(19.06) 지급시기 미도래
공원운영과	공원,유원지 조성	5,052	2,700	75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버스운영과	내성~송정 도시BRT 구축	11,874	-	4,551	절대공기 부족
버스운영과	내성~서면 도시BRT 구축	14,800	3,800	9,488	준공기한 미도래
지역공동체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21,325	3,392	8,318	사업계획 재검토 장기계속사업
좋은기업유치과	지역투자촉진	13,239	-	3,876	기업의 투자미완료
해운항만과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793	6,000	-	행안부 협의지연
수산유통가공과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보조)	11,463	2,851	6,924	절대공기부족

명시이월과 사업이월의 사유는 큰 변화가 없으며,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혹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이월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최근 연도에 추진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당해연도 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2018년	49건	3,469,723	1,419,598	145,873	216,173	18,509	380,555
2017년	47건	3,078,492	1,358,845	147,654	173,498	53,060	374,213
2016년	45건	2,842,293	1,060,914	123,120	149,817	59,100	332,037
2015년	47건	2,829,353	1,245,440	139,648	160,334	62,680	362,662

2018년도의 장기사업 중 완료는 8건의 총사업비 623,577백만원이며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중 계속비사업은 4건으로 총사업비는 867,160백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으며,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기간 소요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의회의 승인 및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액의 과소로 이월되는 것은 매년의 예산의 편성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연도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사업예산의 편성시 연말의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세출의 집행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집행사유 미발생	11,536	10.0%	5,462	7.5%	2,333	2.1%
증감액	6,074	111.2%	3,129	134.1%	-50,892	-95.6%
예산절감	75	0.1%	854	1.2%	11	0.0%
증감액	-779	-91.2%	843	7,663.6%	-218	-95.2%
지출잔액	37,659	32.5%	48,650	67.2%	86,425	77.6%
증감액	-10,991	-22.5%	-37,775	-43.7%	40,301	87.4%
보조금 정산잔액	20,843	18.0%	-	-	-	-
증감액	20,843	-	-	-	-	-
예비비	45,542	39.4%	17,480	24.1%	22,632	20.3%
증감액	28,062	160.5%	-5,152	-22.8%	-18,572	-45.1%
합 계	115,655	100.0%	72,446	100.0%	111,401	100.0%
증감액	43,209	59.6%	-38,955	-34.9%	-29,380	-20.8%

당연도의 집행잔액의 증가는 보조금 정산잔액의 증가와 예비비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며, 예산절감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당연도의 집행잔액의 증가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증가와 사업비로 편성되지 않은 예비비의 증가에 기인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감소 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지출 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전액 불용 사업은 87개 세부사업에 52,794백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시의회사무처	의정사업 운영	35	35	100
재정혁신담당관	예산성과금 제도운영	35	35	100
예산담당관	기관운영	36	36	100
재난대응과	자동기상관측장비	200	200	100
지역공동체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150	150	100
공원운영과	문화관광자원화 개발	500	500	100
체육진흥과	스포츠복합시설 신축	400	400	100
체육진흥과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217	217	100
노인복지과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육성사업	285	285	100
수자원관리과	지방하천 정비(괴정천)	38	38	100
좋은기업유치과	지역투자촉진	2,128	2,128	100
미래산업창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359	359	100
과학서비스금융과	특구기반시설구축	43	43	100
해운항만과	수영만 마리나 조성사업	70	70	100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종합 유통조직 설립운영	50	50	100
스마트시티추진과	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 구축	32	32	100
수산정책과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1,600	1,600	100
농축산유통과	동물보호 복지향상	125	125	100
공항기획과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확충	500	500	100

당해연도의 전액불용사업은 전년도의 72개 세부사업에 18,085백만원에 비하여 15개 세부사업에 34,70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집행잔액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의 관행적 편성, 편성된 예산의 소극적 집행, 추경시 적절한 감액결정의 누락 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최초 예산의 편성 시 과거의 집행잔액 발생의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업예산의 예측과 사용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당해연도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H=D+E+ F+G)	비율 (H/A)
	보조금 수령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명시 이월 (E)	사고 이월 (F)	계속비 이월 (G)		
2018년	3,043,385	2,983,680	48,199	11,506	15,024	1,594	-	28,124	0.92
2017년	2,697,996	2,640,991	54,640	2,365	1,589	394	-	4,348	0.16
2016년	2,595,180	2,525,418	59,883	9,879	1,815	304	-	11,998	0.46
2015년	2,434,350	2,358,788	69,551	6,011	644	1,292	-	7,947	0.33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3,776백만원 증가한 28,124백만원으로 그 사유는 당해연도, 명시이월 등의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업별로는

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부전천), 산성터널 건설, 내성~송정 도시 BTR구축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일반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2018년	6,510	11,897	1,165	19,572
2017년	1,223	750	203	2,176

당년도의 반환해야하는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7,396백만원(899.4%)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태하천복원사업(부전천), 산성터널 건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등의 사업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당해년도 수령한 보조금 중 이월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수령액 (국비)	수령액 (시비)	계	미집행액	비율
도로계획과	산성터널건설	4,682	8,700	13,382	3,600	26.9%
체육진흥과	스포츠복합시설신축	120	280	400	400	100.0%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2,940	192	3,132	2,563	81.8%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지원(직접)	1,192	298	1,490	41	2.7%
기후대기과	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보조)	420	300	720	477	66.3%
기후대기과	탄소포인트제운영(지원)	325	325	650	108	16.7%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공모)	1,190	510	1,700	67	3.9%
국제통상과	마케팅등지역특성화산업육성	558	558	1,115	80	7.2%

부 서	사업명	수령액 (국비)	수령액 (시비)	계	미집행액	비율
과학서비스 금융과	특구기반시설구축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2,509	5,406	7,915	2,086	26.4%
해양수도 정책과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보조일반)	311	140	451	55	12.1%
수자원관리과	생태하천복원사업(대연천)	2,286	100	2,386	1,190	49.9%
수자원관리과	생태하천복원사업(부전천)	7,300	282	7,582	7,518	99.2%
수자원관리과	지방하천정비 (지사천고향의강조성)	684	740	1,424	1,202	84.4%
수자원관리과	생태하천복원사업(대리천)	2,917	910	3,827	1,128	29.5%
버스운영과	내성~송정도시BRT구축	4,095	5,647	9,742	2,253	23.1%
좋은기업 유치과	명지글로벌캠퍼스조성	385	-	385	185	48.0%
수산정책과	순직선원위령탑이전	800	800	1,600	1,600	100.0%
낙동강관리 본부	생태공원편의시설확충(보조)	486	-	486	171	35.3%
해운항만과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794	-	794	333	41.9%

2) 개선 및 권고사항

당년도의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의 사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국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부 대형사업의 취소 등에 기인합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직접사업 수행 감소, 민간이전등으로 인한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저하

1) 정책사업의 직접수행비중 저하에 따른 문제점

아래표를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정책사업비대비 약 77%에 이르는 금액의 예산이 민간이전,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이전, 공사공단전출을 통해 부산시 본청행정의 외부에서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이 수행되는 정책사업 일수록 직접수행비중이 낮았습니다.

<표> 정책사업의 외부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정책사업	6,794,106,538,560	6,446,145,352,600	6,101,791,472,270	5,681,127,335,82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9,992,416,410	85,464,312,260	79,895,050,490	79,386,116,430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873,144,200	6,488,482,000	5,677,162,000	4,160,344,000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1,528,482,350	12,307,805,900	13,166,019,750	13,151,626,730
307-05 민간위탁금	125,848,103,980	117,948,189,430	119,837,512,030	107,329,195,430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914,513,000	2,356,558,000	2,066,465,000	3,632,383,340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028,908,460	9,714,377,000	6,537,315,000	7,075,810,330
307-09 운수업체보조금	347,821,170,590	349,337,029,110	354,244,418,600	336,282,163,390
308 자치단체등이전	3,929,277,088,370	3,697,601,587,660	3,417,327,580,060	3,193,381,526,940
309 전출금	101,039,203,840	110,090,407,590	105,583,186,000	95,250,985,000
402 민간자본이전	171,554,658,130	160,455,253,050	141,312,599,480	134,597,049,19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91,136,836,000	426,737,721,780	415,784,626,580	373,334,149,050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4,906,403,000	8,390,671,000	3,338,691,000	3,063,553,000
항목의 합계	5,229,920,928,330	4,986,892,394,780	4,664,770,625,990	4,350,644,902,830
	0.770	0.774	0.764	0.766

행정사업이 외부에서 진행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의 약화로 인한 공공성과 효율성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로 진출된 재정자금에서 발생한 이월과 집행잔액이 계상되지 않아 연도별 사업의 집행실적이 차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됩니다.

문화예술과는 79억9천4백만원을 부산문화재단에 출연금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고, 이 예산이 모두 집행되어 이월이나 불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부산문화재단으로 넘어간 후 집행잔액은 부산시 결산실적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부산문화재단의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따로 살펴보면, 275,355,788원의 집행잔액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가운데 시의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다음연도에 반납되고, 출연금 항목의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재단의 사업비로 재편성되어 사용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나, 이로 인해 연도별로 보고되는 부산시 재정의 집행실적은 과소 혹은 과다 표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 외부에서 수행되는 사업이 증가할수록 이같은 기간별 성과 금액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효율성 저하와 방만한 운영 또한 우려됩니다. 본청 외부로 진출되거나 민간이전, 위탁된 사업비는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발생을 새로이 야기함은 물론 자칫 불필요한 집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로 편성된 소중한 재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진되어 사업비의 집행율이 낮은 사례가 발견됩니다. 출자·출연기관 가운데는 사업비 보조금의 36%에 해당하는 재정자금을 시설관리용역비(청소,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이나 대행사업비를 재차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과 이에 준하여 정산하는 사업비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이전, 민간위탁, 출자·출

연기관을 통한 사업의 수행이 해당기관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이 다만 사업을 사후관리하고 재정자금을 정산하는데 그친다면 소기의 목적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2) 민간이전 사업의 증가

〈표〉 정책사업중 민간이전 비중

(단위 : 원)

구분	일반회계 정책사업 중 민간이전 비중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정책사업비	6,794,106,538,560	6,446,145,352,600	6,101,791,472,270	5,681,127,335,820
	120	113	107	1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9,992,416,410	85,464,312,260	79,895,050,490	79,386,116,430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873,144,200	6,488,482,000	5,677,162,000	4,160,344,000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1,528,482,350	12,307,805,900	13,166,019,750	13,151,626,730
307-05 민간위탁금	125,848,103,980	117,948,189,430	119,837,512,030	107,329,195,430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914,513,000	2,356,558,000	2,066,465,000	3,632,383,340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028,908,460	9,714,377,000	6,537,315,000	7,075,810,330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2,589,479,340	81,148,566,610	22,725,374,620	9,826,076,110
402 민간자본이전	171,554,658,130	160,455,253,050	141,312,599,480	134,597,049,190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1,248,965,000	85,632,347,780	88,036,723,000	65,534,532,050
민간이전등의 사업비 합계	579,578,670,870	561,515,892,030	479,254,221,370	424,693,133,610
	136	132	113	100
정책사업대비 비중	0.09	0.09	0.08	0.07

위 표를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정책사업비 대비 7%에서 9%에 이르는 금액의 예산이 민간이전등으로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이 수행되는 정책사업일수록 민간이전과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2015년을 기준(100)으로 정책사업비 성장정도와 민간이전등 사업비 합계액의 성장세를 비교하면 민간이전등의 사업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책사업비가 2015년을 100이라 할 때 2018년이 120이라면, 민간이전등은 136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출자·출연기관 예산과목 해소에 따른 문제점

예산담당관실은 2017년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폭발적 증가세를 지적하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예산과목해소를 한 바, 2018년부터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과목의 결산과정에서 공공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5, 2016, 2017년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단위: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기관의 자본적 대행사업비	575	477	734
공기관의 경상적 대행사업비	30	154	7,243
합계	605	631	7,977

이같은 공기관대행사업비의 증가 배경을 살펴보면,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정과 달리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법적 사전절차 없이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산실은 공기관대행사업의 증가가 수수료의 증가 및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 점, 대행사업은 업무추진과정의 책임이 행정청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성격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과목해소할 것을 각 부서에 지침으로 내린 바 있습

니다. 그런데 2018년 결산과정에서 출연금으로 과목해소된 사업중 사업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상당액에 대한 정산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발견됩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예에 따라 정산하게 되고, 정산서를 소관부서에서부터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연금으로 과목해소되면,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사후정산토록 하여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출연금에서 감액처리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사업출연금에 해당하는 과목의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나, 실제 운용과정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과목해소된 사업은 정산과정이 생략되거나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출연금의 미흡한 정산과 관리로 인해 당초 의도와 달리, 의회와 시민의 감시 밖에서 상당한 재정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 시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부산시 본청의 사업이 공기관으로 대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4) 개선 및 권고사항

민간이전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행정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이전은 행정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투명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이나 공기관에 지급되는 위탁 대행수수료(통상 5-10%)에 더하여 투명하지 못한 경영이 초래하는 비효율을 감안하면, 효율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다른 시도보다 많은 19개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면서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사업의 재차 위탁 여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산시 본청의 공무원 활동이 사업의 정산과 사후관리에 상당수 할애되고 있는데서 더 나아가 출자·출연기관조차 사업의 정산과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출자·출연기관의 존재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출자·출연기관의 사업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며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재차 위탁을 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버스준공영제 운영의 표준원가 산정의 문제점

1) 실태와 문제점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이후 부산시가 버스회사를 위해 지급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의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운수업계보조금	113,412	112,923	126,986	126,300	126,818

<표>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의 추이

연도	합계	대 중 교 통								택시	승용	승합	기타
		소계	버 스				철 도						
			시내	마을	통근 통학	기타	도시	경전철	국철				
2018	6,460 (100.0)	2,830 (43.7)	1,248 (19.3)	247 (3.8)	117 (1.8)	2 (0.0)	1,160 (18.0)	27 (0.4)	29 (0.4)	717 (11.1)	2,213 (34.3)	470 (7.3)	230 (3.6)
2017	6,621 (100.0)	2,890 (43.7)	1,284 (19.4)	250 (3.8)	123 (1.9)	2 (0.0)	1,179 (17.8)	28 (0.4)	24 (0.4)	768 (11.6)	2,237 (33.8)	484 (7.3)	242 (3.6)
2016	6,637 (100.0)	2,896 (43.6)	1,320 (19.9)	251 (3.8)	127 (1.9)	2 (0.0)	1,169 (17.6)	26 (0.4)	1 (0.0)	784 (11.8)	2,213 (33.3)	503 (7.6)	241 (3.7)
2015	6,623 (100.0)	2,894 (43.7)	1,365 (20.6)	251 (3.8)	98 (1.5)	2 (0.0)	1,153 (17.4)	24 (0.4)	1 (0.0)	795 (12.0)	2,166 (32.7)	532 (8.0)	236 (3.6)
2014	6,734 (100.0)	2,854 (42.4)	1,422 (21.1)	253 (3.8)			1,157 (17.2)	22 (0.3)		864 (12.8)	2,161 (32.1)	631 (9.4)	224 (3.3)
2013	6,714 (100.0)	2,871 (42.8)	1,464 (21.8)	258 (3.8)			1,129 (16.8)	20 (0.3)		886 (13.2)	2,119 (31.6)	637 (9.5)	201 (3.0)
2012	6,662 (100.0)	2,817 (42.3)	1,443 (21.7)	253 (3.8)			1,104 (16.6)	17 (0.3)		878 (13.2)	2,112 (31.7)	669 (10.0)	186 (2.8)
2011	6,615 (100.0)	2,809 (42.5)	1,472 (22.3)	258 (3.9)			1,064 (16.1)	15 (0.2)		885 (13.4)	2,042 (30.9)	699 (10.6)	180 (2.7)
2010	6,783 (100.0)	2,772 (40.9)	1,536 (22.6)	267 (3.9)			969 (14.3)			921 (13.6)	2,072 (30.5)	802 (11.8)	216 (3.2)
2009	6,700 (100.0)	2,755 (41.1)	1,562 (23.3)	265 (4.0)			928 (13.9)			922 (13.8)	2,004 (29.9)	802 (12.0)	217 (3.2)

- 주 : 1) 승객통행량은 부산시 등록차량의 통행량으로 화물차, 시외·고속버스, 도보 통행량이 제외됨
 2)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타 영업용버스(공항리무진, 시티투어), 도시철도, 경전철, 국철(경부선, 동해선) 통행량은 연평균 일통행량이며, 통근·통학버스, 승용차, 택시, 승합차, 기타 차량의 통행량은 매년 10월~12월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1일 단위로 산출한 평균통행량임.
 3) 도시철도 통행량은 도시철도 각 호선간의 환승통행 포함.
 4) 부산~김해 경전철 통행량은 부산시내 소재 역사의 승객승차이며, 국철 통행량은 부산 시내간 이동승객임
 5) 승합차 통행량은 전세버스 포함
 6) 기타 통행량은 이륜차, 자전거

위의 표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이 44%에 이르고 있어 버스준공영제는 부산시의 대민행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2018년 현재 33개 업체 2,551대 버스에 대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운송원가 보상이란 적자가 되지 않도록 운송원가를 보상하는 개념이 아니라, 버스업체에 감가상각비와 이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업체는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추가해서 이윤이 보장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얼마로 하는가가 관심사가 될 뿐 아니라,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준공영제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됩니다.

부산시의 표준운송원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차량감가상각비와 적정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일일 버스 한 대 운영의 표준원가 총액 중 6.5%-6.6%를 2017년에, 그리고 6.5-6.3%를 2018년에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차량감가상각비와 적정투자보수를 얼마로 산정하는가는 부산시 재정지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금액은 표준원가 총액중 6.95-7.99%까지 허용되었다. 참고로, 인천시의 2015년 표준운송원가 중 감가상각비와 이윤의 비중이 5.7%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산시의 이 비중은 상당히 높았으며,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더라도 인천시와 함께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은 사실상 보조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담당자 외의 감사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오랫동안 시내버스의 재정현황과 사업성과는 부산시의 사후관리 밖에 있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2012년에서 2015년간 시내버스 회사의 당기순이익율은 평균 5% 남짓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에 힘입어 부채비율의 감소와 자본비율의 증가로 재무상태 개선을 실현한 반면, 부산시의 운송손실 보전금은 일천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지출되어 왔던 것입니다.

<표> 시내버스 지난 5년간 재무비율 변동 추이

(출처 : 2016년 표준운송원가 보고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채비율	279.43%	189.12%	130.92%	113.28%
자본비율	26.36%	34.59%	43.30%	46.89%
유동비율	82.65%	97.50%	119.59%	103.75%

<표> 시내버스의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변동 추이

(출처 : 2016년 표준운송원가 보고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증가율	-	2.71%	3.46%	-3.16%
원가(매출원가및판관비) 증가율	-	1.73%	2.98%	-1.69%
매출총이익율	14.24%	14.62%	15.13%	14.78%
영업이익율	3.82%	4.74%	5.18%	3.74%
당기순이익율	5.19%	5.77%	6.67%	4.22%

버스 표준운송원가 계산은 3년마다 시행되고, 2018년 운송손실 보전금 지급액의 근거가 되는 원가계산은 201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 운송원가계산은 버스회사의 실제원가 제시자료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표준원가는 실제 원가계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산출되었다. 표준운송원가계산 용역보고서는 아래에서 표시된 109억원의 차액을 버스회사가 원가절감에 기울인 노력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표> 버스 표준운송원가 총정산차액(실비항목 제외)

구분		일일대당 정산차액	운행대수적수/ 보유대수적수	연간초과지급액 (단위:백만원)
2012년	가동비	405	810,755	328
	보유비	5,699	108,271	617
2013년	가동비	2,700	811,074	2,189
	보유비	8,297	105,442	875
2014년	가동비	3,408	812,657	2,770
	보유비	9,396	103,858	976
2015년	가동비	2,748	815,058	2,239
	보유비	9,315	101,457	945
총합계				10,939

그러나 2018년 말 시행된 감사보고서는, 2016년 시행된 표준운송원가 측정 당시 실사가 수행되지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운송원가가 불충분한 원가측정의 결과 과대표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실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이행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2016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그 실사의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타업체의 임직원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거나, 운송원가와 무관한 협회비, 소송비용, 임원 외부교육비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표준운송원가보고서상 1일 운전직 급여 표준원가의 기준은 평균근속연수 9.7년에 따른 임율을 기준으로, 1대 운행에 2.4명(버스운행시간은 평균 1일 19시간)이 고용되어 있고, 연장근로시간은 33시간으로 측정되어 있어 1일 운전직 표준인원은 1대당 2.433명, 표준임율 131,875원(2016년, 365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하루의 운전직 표준원가는 320,891원입니다. 그리고 운전직 표준원가는 원가의 56%를 차지합니다.

표준운송원가보고서에 따르면,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리직 인원수는 5대에 1명, 정비직의 인원수는 7대에 1명, 버스 37대에 임원 1명의 인건비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관리직이나 임원과 같은 간접인건비가 크게 계상되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은 성격상 보조금입니다. 재정지원이 부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출처로 하고 있고, 별도의 반대급부가 없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0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등이 규정하는 지방보조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감독의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버스준공영제가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보조금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표준원가 산정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1) 결산액과 잔액증명서의 대사

2018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은 142,252백만원으로서, 이는 부산광역시금고 보관 잔액증명서와 일치합니다.

(2)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본 회계연도의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세입결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징수비율 (C/A)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전년도(①)	1,927,991	1,959,734	1,926,082	98.28%	500	33,152
당해연도(②)	1,976,797	2,049,999	2,008,721	97.99%	149	41,129
전년도比 (②-①)	48,806	90,265	82,639	-0.30%	-351	7,977
증감률(%) [(②-①)/①*100]	2.53%	4.61%	4.29%	-0.30%	-70.20%	24.06%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61%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99.90%보다 1.71%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06%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금액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247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538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950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9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2>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추세를 보면 일시적 감소를 보였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 대비 2018년 세입은 4.3%, 세출은 3.2%, 잉여금은 2.2% 증가하였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5개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세 입		2,008,721	1,926,082	2,027,994	1,934,367	1,620,397
세 출		1,866,469	1,809,021	1,881,867	1,793,664	1,489,060
잉여금	소 계	142,252	117,061	146,127	140,703	131,337
	이월금	39,869	37,163	45,014	73,591	88,437
	보조금집행잔액	236	37	35	137	146
	순세계잉여금	102,147	79,861	101,078	66,975	42,754

본 회계연도 수납액은 〈표3〉에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82,639백만원 증가한 것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및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의료기금특별회계, 소방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의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회계연도의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1,976,797백만원보다 31,924백만원이 더 수납되었는데, 회계별로는 16개 기타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733백만원 등 10개 회계에서 40,727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719백만원 등 6개 회계에서 8,803백만원 부족하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표3〉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비율
2018년	1,976,797 (37,163)	2,049,999	2,008,721	149	41,129	97.99%
2017년	1,927,991 (45,014)	1,959,734	1,926,082	500	33,152	98.28%
2016년	2,042,172 (73,591)	2,062,104	2,027,994	1,250	32,860	98.35%
2015년	1,932,518 (88,436)	1,970,483	1,934,367	475	35,642	98.17%
2014년	1,617,441 (104,778)	1,654,564	1,620,397	317	33,851	97.93%

본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7,977백만원 증가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 미수납액의 현황을 <표4>와 같이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미수납액을 차년도에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수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인 부분인 바 향후에도 징수 열의를 갖고 미수납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표4> 이월된 미수납액의 연도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제수납액 (가) (나)+(다)	현년도 수납액 (나)	과년도 수납액 (다)	(다)/전년미수납 이월액 비율
2018년	2,008,721	1,996,810	11,911	35.9%
2017년	1,926,082	1,914,206	11,876	36.1%
2016년	1,858,751	1,848,333	10,418	29.2%
2015년	1,934,367	1,927,360	7,007	20.7%
2014년	1,620,397	1,617,055	3,342	7.75

아래의 <표5>는 지난년도 미수납액 관리실태로 광역교통, 교통,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96.61%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월사유는 납세태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표5> 지난년도 미수납액 관리실태

(단위 : 백만원)

과 목	미수납액	이 월 사 유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소송 계류	자금 압박	기 타
광역교통시설	20,247	-	-	8,818	-	-	-	11,429
교통사업	9,538	864	190	7,820	-	591	73	-
소방사업	17	1	-	9	1	-	-	6
유료도로	1,099	30	-	-	12	-	-	1,057
집단에너지	278	-	-	232	-	-	-	46
학교용지부담금	9,950	-	-	9,671	-	274	-	5
합 계	41,129	895	190	26,550	13	865	73	12,543

2) 개선 및 권고사항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구·군의 사업계획(인·허가, 변경, 사용승인·준공) 등의 통보를 통해 부담금을 부과하며, 부과시기가 사업 착공 이전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시 부과하게 되어있어 초기자금 부족에 의한 체납으로 이어지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조합의 실질적 자금 부족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가산금은 본세의 3%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당기일이 지난 장기 체납자의 소멸시효의 완성, 주소불명 등으로 발생하는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채권 확보와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중 사용승인 이전 사업(미착공, 공사중지,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구·군 사업담당부서를 통하여 사업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전에 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부담금의 실질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에 해당하는 소액의 다수의 체납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금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체납액 대한 가산금이 발생하고 있음을 적극적 홍보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무재산자의 이월액 중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통해 이월액을 줄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017년까지 일반회계였다가 당해연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 조달 및 부담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분양하려는 시행사에게 분양가격의 1천분의8(단독주택 1천분의14)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군에서는 특례법 제5조 및 교육부 해석례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교육부 지침에 대한 개발시행자의 이의제기 및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부 법령 조항의 미비로 세입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시행사와 업무협조를 구축하여 소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나.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1) 세출결산 총괄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의 5년간 결산 추세는 <표1>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을 비율 1과 비율 2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비율 1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편성과 지출의 합리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기 이후의 세출예산 편성과 예비비 책정에 반드시 준거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수치이며, 비율 2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입니다.

비율 1은 2016년까지는 계속 증가 추이였으나 201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율 2는 역시 2016년을 기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본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세출이 전년 대비 계획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표1>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연도	A 예산현액	지출	B 이월	C 집행잔액	비율 1 C/A	비율 2 (B+C)/A
2018년	1,976,797	1,866,469	49,186	61,142	3.1%	5.6%
2017년	1,927,991	1,809,021	37,163	81,807	4.2%	6.1%
2016년	2,042,172	1,881,867	48,014	112,291	5.5%	7.8%
2015년	1,932,518	1,793,664	73,591	65,263	3.3%	7.2%
2014년	1,617,441	1,489,060	88,437	39,944	2.4%	7.9%

한편 16개의 각 특별회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표2>과 같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집행잔액사유					
	보조금		계획 변경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반납액	정산 잔액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	-	-	2,143	2,143
경륜사업	-	-	-	2,000	251	2,251
의료급여기금	-	61	-	1	7,530	7,592
교통사업	110	113	5	1,122	1,099	2,449
광역교통시설	-	3	-	591	12,235	12,829
공영차고지조성사업	-	-	-	855	681	1,536
도시철도사업	-	-	-	263	166	4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	-	-	-	34	5,083	5,117
유료도로	-	-	-	74	6,086	6,16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	-	-	152	-	152
원자력발전지역개발	117	232	22	511	239	1,121
재정비축진	-	-	-	17	11,913	11,930
기반시설부담구역	-	-	-	-	4,928	4,928
화력발전지역개발	-	-	-	1	131	132
소방사업	9	8	13	1,999	100	2,129
학교용지부담금	-	-	-	1	243	244
합계	236	417	40	7,621	52,828	61,142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은 주로 과다한 예비비 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예비비 편성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한 재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월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최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향후 추경 편성시 감액 등 예비비 관련 예산을 감액하여 새로운 투자에 반영하려는 등 세출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각 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반영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세출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유사, 중복 설치된 경우에는 과감하게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 법률에서의 제약사항이 없는 한 조례개정을 통한 특별회계를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 현황 및 문제점

해운대지역난방공급은 지난 20여년간 (주)부산도시가스에서 독점적 수탁운영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사계약의 범규 미준수, 업체간 담합, 위탁운영비 집행 부적정의 사례가 발견되어 지역난방 수탁운영에 대한 관리·운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인 부산환경공단으로 수탁운영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부산도시가스에서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의 수탁업체 변경 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미지급으로 연간 8~9억원의 예산절감
- ▷ 민간 위탁시 예산 승인 후 예산절감이 어려운 반면 공기업 위탁 시 경영평가 등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의 제고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는 <표1>과 같습니다.

<표1>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원감절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절감액 (A+B)	동력비 지출(억원)				열판매 수입(억원)		열생산량(Gcal)		
		계 (A)	LNG	전기	연료전지	인하전(B)	인하후	보일러	연료전지	소각로
‘16.7~’17.6 (민간운영)	55억원	204	193	8	3	230	230	209,745	6,276	53,869
‘17.7~’18.6 (공단운영)		173	113	27	33	254	237	130,601	102,199	63,965
차 이		31 ① 감소	80 감소	19 증가	30 증가	24 ② 증가	7 증가	79,144 감소	95,923 증가	10,096 증가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동력비 절감에 따른 31억원 열판매 수입 증가액 24억원으로 기존 민간수탁업체((주)부산도시가스) 대비 총5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공단으로의 수탁업체 변경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제시한 예산 세부내역을 징구하여 검토한 결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존속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자문위원회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문위원회 명단 검토 결과 자문위원으로써의 지식과 경험 등 자질에 상당한 의구심이 발생하며 2018년 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제시한 예산 내역은 <표2>와 같습니다.

<표2> 2018년 자문위원회 예산내역

(단위 : 원)

계정과목	금 액	내 용
일반운영비	3,000,000	자문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30,000,000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800,000	자문위원회 회의운영
	12,000,000	자문위원회 국내 에너지선진시설 자료수집
	6,000,000	자문위원회 운영비
합계	61,800,000	

집단에너지공급시설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연간 61,800,000원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자문으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운영된다면 실효성이 있겠지만 회의내용과 견학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주)부산도시가스에서 공단으로 수탁업체의 변경은 20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 담당부서(클린에너지산업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단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토대로 해당 내역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것인지와 계약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리겠

습니다.

한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자문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문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자문위원 위촉 공고를 게시하고 인재풀을 구성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자문위원을 선발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문위원들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가 존속된다면 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해운대 집단에너지사업은 현재 2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이 아닌 변동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매월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여야 하는가에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자문위원회의 존속이 필요없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체하고 자문위원회에 지급되는 비용은 절감하여야만 합니다.

(3) 공사·공단 전출금 미정산

1)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 현재 기타특별회계 세출 중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타특별회계에서 공사·공단전출금 현황은 <표3>과 같습니다.

〈표3〉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출금	수탁기관	전출목적
집단에너지공급시설	20,808	부산환경공단	시설및운영비 보조
경륜사업	32,42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시설및운영비 보조
교통사업	11,105	부산시설관리공단	시설및운영비 보조
도시철도	208,945	부산교통공사	결손 보전
유료도로	37,925	부산시설관리공단	시설및운영비보조
합계	311,203		

상기 전출금은 해당 수탁기관에서 예산 편성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정 승인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에 대한 정산의무가 명시화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어떠한 점검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집단에너지공급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부산환경공단 및 시설관리공단과 매년 전출금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차기년도에 집행잔액을 그외수입(224-06)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전출금에 대해서 정산의무가 명시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미 전출금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바 전출금을 지출하고 있는 타 특별회계에서는 정산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출금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에 대해 회수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은 위탁운영의 성격이 아닌 결손보전인 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규정 위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수탁기관이 예산편성 시 제출한 계정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증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정과목	검토사항
인건비	- 사업수행에 있어서 적정인원인가 - 시간외근무, 야간, 휴일, 장기근속, 연차수당에 대한 logic이 타당한 것인가
일반운영비	- 영조물 보험료 산출금액이 비교견적을 통해 적정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 사무용품비의 추세분석을 통한 과다책정 여부 - 공공요금의 추세분석을 통한 과다책정 여부 - 업무추진비의 산정근거가 타당한 것인지
복리후생비	-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는지 - 급여 성격의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였는지
평가급	- 평가급의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수선유지비	- 해당 설비 등에 정기적 수선유지비 발생이 맞는 것인지

물론 우리 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전출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전출금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3. 기금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과 전년도 말 조성액의 합계액 대비 당해연도 사용액과 사용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1> 기금의 조성 및 사용액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년도중 조성액(B)	당년도중 조성총액 (C=A+B)	당년도중 사용액(D)	사용비율 (E=D/C)	당해연도말 조성액 (F=C-D)
계	1,053,489	712,759	1,766,248	713,267	40.38	1,052,981
통합관리기금	1,097	402,130	403,227	401,978	99.69	1,249
지방채상환기금	1,919	42,866	44,785	42,690	95.32	2,095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4,679	825	5,504	2,918	53.02	2,586
집단에너지시설기금	23,602	2,848	26,450	1	-	26,449
중소기업육성기금	115,893	55,135	171,028	25,135	14.70	145,893
투자진흥기금	144,696	31,975	176,671	3,183	1.80	173,488
남북교류협력기금	6,309	114	6,423	1	0.02	6,422
사회복지기금	13,079	900	13,979	3,734	26.71	10,245
재해구호기금	127,983	2,461	130,444	417	0.32	130,027
식품진흥기금	14,711	2,030	16,741	3,460	20.67	13,281
환경보전기금	13,045	8,709	21,754	7,831	36.00	13,923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881	2,770	3,651	2,848	78.01	803
재난관리기금	84,369	34,722	119,091	39,346	33.04	79,74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52,826	13,690	166,516	10,667	6.41	155,849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99,860	12,961	112,821	12,897	11.43	99,924
문화진흥기금	97,305	3,879	101,184	600	0.59	100,584
체육진흥기금	58,014	3,476	61,490	4,323	7.03	57,167
지역개발기금	93,221	91,268	184,489	151,238	81.98	33,251

기금별 과거3개년 사용비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2〉 과거3개년 기금별 사용비율 현황

연 번	기 금 명	2018년	2017년	2016년
1	집단에너지시설기금	0.00%	0.00%	27.50%
2	남북교류협력기금	0.02%	0.00%	0.00%
3	재해구호기금	0.32%	0.56%	0.26%
4	문화진흥기금	0.59%	6.46%	3.94%
5	투자진흥기금	1.80%	1.39%	1.22%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6.41%	12.66%	9.05%
7	체육진흥기금	7.03%	5.42%	4.88%
8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11.43%	2.58%	1.82%
9	중소기업육성기금	14.70%	21.20%	32.64%
10	식품진흥기금	20.67%	14.98%	13.69%
11	사회복지기금	26.71%	8.93%	8.60%
12	재난관리기금	33.04%	23.51%	21.04%
13	환경보전기금	36.00%	40.22%	26.97%
14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53.02%	49.01%	35.65%
1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8.01%	84.43%	94.54%
16	지역개발기금	81.98%	51.17%	-
17	지방채상환기금	95.32%	97.22%	98.62%
18	통합관리기금	99.69%	99.69%	99.64%

기금의 설치사유는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과거 3개년간 사용비율 현황을 보면 집단에너지시설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해구호기금, 문화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은 기금의 사용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매년 사용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3〉 기금예치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당해연도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통합관리 기금
통합관리기금	1,248	1,248	-	-	-	-
지방채상환기금	2,094	1,947	-	147	-	-
대학및인재육성	2,586	-	-	1,250	-	1,336
집단에너지시설	26,449	2,777	-	4	-	23,668
중소기업육성	145,893	17,800	-	5,434	15,486	107,173
투자진흥	173,488	2,400	-	5,393	-	165,695
남북교류협력	6,422	1,100	-	152	-	5,170
사회복지	10,246	2,400	8	366	-	7,472
재해구호	130,027	92,516	912	259	-	36,340
식품진흥	13,280	1,867	17	-	396	11,000
환경보전	13,923	1,800	-	2,735	-	9,38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804	-	-	804	-	-
재난관리	79,746	58,000	209	7,440	-	14,0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	155,848	8,500	44	4,586	-	142,718
출산장려및양성평등	99,924	2,692	25	175	-	97,032
문화진흥	100,584	89,880	1,120	3,739	-	5,845
체육진흥	57,167	7,066	82	2,882	-	47,138
지역개발	33,252	4,000	-	-	1,252	28,000
합계	1,052,981	295,993	2,417	35,366	17,134	702,073
예치비율	100%	28%	0%	3%	2%	67%

기금은 사용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여유자금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분산하여 금리가 높은 예·적금등에 예금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표3>과 같이 일반 및 공공예금을 하고 있어 이자수입의 감소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의 비중을 늘려가야만 합니다.

또한 각 기금별로 기금의 사용시기 별 집행금액 추정을 정교하게 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유치 및 관리하여 세수증대(이자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선급비용 및 선수수익 산정

1) 현황 및 문제점

기간이 확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이 장기인 보험 및 임대료 등은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기간손익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관련 산식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각 부서에 배부 및 취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당기에 상기 방식으로 산정한 선급비용 및 선수수익의 건수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선급비용	834	283,101
선수수익	1,262	5,203,316
합 계	2,096	5,486,417

상기 표에서처럼 결산 시 기간손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의 건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각 부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작성하게 되면 누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보험료와 임대료 등은 기간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보험료와 임대료 등을 시스템 입력 시 해당 기간을 입력하는 기능과 결산 시 입력한 기간을 토대로 기간손익을 산정하는 기능을 ‘e-호조시스템’에 추가하면 누락할 가능성 없이 자동으로 선급비용 및 선수수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내부거래 거래처코드 추가

1) 현황 및 문제점

각 회계 및 지방공기업 간 기중 거래와 기말 채권과 채무는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됩니다. 현재 결산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의 결산

담당자가 과목명과 각 건별 적요를 확인하여 내부거래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부거래 금액을 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뿐만 아니라 일부 내부거래의 누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기 및 전기에 제거된 내부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재정상태표(자산/부채)	1,792,461	1,655,007
재정운영표(기중거래)	970,443	1,094,307

2) 개선 및 권고사항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시스템에 입력할 때 각 회계 및 지방공기업 별로 해당 코드를 선택 또는 별도의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e-호조시스템’에 추가하면 결산 시 자동으로 내부거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소액 자산 분류

1) 현황 및 문제점

행정안전부의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각 부서에서 물품 구입 시 해당 물품의 수명, 활용목적, 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산 또는 소모품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류 기준에 사업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여 부서별로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상이하게 분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으로 분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회계재산담당관실의 물품관리 담당자가 검토를 하여 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소모품으로 분류하면 해당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소모품비로 분류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용	금 액	부 서 명
부산공영주차장 스마트파크킹 확산시스템	241,602,000	택시운수과
도시공간정보 운영용 GIS S/W 추가 구입	191,100,000	토지정보과
2018년 도매시장 CCTV 제조 구매	27,884,720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전자식 계량기 구매	16,530,800	

2) 개선 및 권고사항

당청 및 산하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각 부서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산 등재가 필요한 비소모품과 일반 소모품의 구분에 대한 안내를 권고 합니다.

(4) 소프트웨어(S/W) 예산 편성목 추가

1) 현황 및 문제점

4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업무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및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성목 및 통계목이 부족하며, 특히, 전용소프트웨어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편성목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S/W)와 관련한 편성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편 성 목	설 정 (통계목 포함)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가. 3)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등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하면 전용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하며, 범용소프트웨어는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전용과 범용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전용소프트웨어가 소모품비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현재 개발 및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의 목적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사업부서 담당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편성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용 및 범용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 것을 권고 합니다.

(5) 장기미회수채권 및 이자

1) 현황 및 문제점

1980년 7월에 해운대구 반송동 토지를 ‘반송시장 번영회’에 수익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 매각대금 잔액을 계속 미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6년 1월에 해당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권 309,289천원이 현재까지 미회수 됨에 따라 관련 이자가 2018년말 현재 2,994,048천원이 되었습니다.

2) 개선 및 권고사항

최종 판결 이후 많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채권금액의 10배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이자가 매년 77,322천원이 발생하므로,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권고합니다.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1) 성과지표 달성현황

1)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8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을 세웠으며, 26개의 전략목표와 210개의 정책사업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210개의 정책사업목표에 4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성과달성도를 총괄하면 달성 303건, 초과달성 65건, 미달성 45건으로 요약 됩니다. 미달성한 성과를 일부 보고한 부서 가운데는 전년대비 정책사업 결산액이 증가한 실·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행복추진본부, 감사관, 도시계획실, 행복주택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행정지원국, 미래산업국, 해양농수산국,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검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부족하며 정책사업과 재정 지출의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정책사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① 성과지표가 당해 정책 사업목표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② 지속적,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측량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③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사항으로 성과지표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실제 사용되는 지표가 전체사업에서 극히 일부의 성과에 불과하여 대표성이 없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특별한 노력 없이 사업 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다수 발견되었고, 작년에 이미 초과 달성하였으나 당기목표수준을 전기수준으로 과소하게 설정하여 초과달성한 부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여 안이한 목표설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를 “달성”으로 보고한 사업 가운데는 목표치 설정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①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한 경우 ② 비율로 설정하는 실적 측정에 있어 분모가 되는 수치를 낮게 설정하여 실적치가 목표 이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경우 ③ 사업계획서에 설정한 목표치를 사업 진행 중에 수정하여 실적이 높게 표현되도록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 실시

성과실적치를 검토하여 본 결과 성과 목표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과 전년도 실적치와 동일하게 당해 실적치가 표시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히 전년도와 당해연도가 일치될 수도 있으나, 일부는 성과보고서 작성시까지 실적치가 나오지 않아 유사한 수치 또는 목표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목표치만큼 표시하고, 달성률을 100%인식한 사항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치와 다르게 표시하여 달성률이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한 사항도 발견되었습니다.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 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합니다. 또한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는 경우도 발견되어 사후에 적절히 확인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과분석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시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며,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원인 관계를 확인한 결과 원인이 적절하게 분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표1> 성과지표 달성현황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 성	미달성			
계	26	210	413	65	303	45	10,606,702	7,436,637	3,170,065
시의회사무처	1	1	3	1	2	0	14,421	14,378	43
시민행복추진본부	1	5	8	3	4	1	7,754	0	7,754
시민소통관	1	3	5	1	4	0	12,706	12,211	495
감사관	1	3	7	3	3	1	602	564	38
정책기획관	1	10	18	2	15	1	18,073	925,800	△907,727
재정기획관	1	4	12	1	11	0	1,170,281	0	1,170,281
시민안전혁신실	1	6	13	4	9	0	158,427	201,801	△43,374
도시계획실	1	8	22	2	15	5	639,467	127,508	511,959
도시균형재생국	1	9	12	1	11	0	134,196	0	134,196
행복주택녹지국	1	9	16	2	11	3	278,230	0	278,230
문화체육관광국	1	15	34	6	21	7	479,506	0	479,506
복지건강국	1	9	22	4	16	2	3,251,927	2,742,222	509,705
여성가족국	1	11	26	3	21	2	786,451	720,457	65,994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 성	미달성			
행정지원국	1	10	18	1	16	1	915,335	0	915,335
기후환경국	1	12	20	3	11	6	161,234	260,028	△98,794
교통혁신본부	1	15	23	3	17	3	1,339,338	1,523,017	△183,679
일자리경제실	1	15	22	5	15	2	229,198	230,494	△1,296
미래산업국	1	17	33	11	19	3	240,065	0	240,065
해양농수산국	1	20	39	4	28	7	134,848	92,163	42,685
신공항추진본부	1	2	3	0	3	0	752	1,455	△702
소방안전본부	1	20	41	4	36	1	568,376	521,979	46,396
인재개발원	1	1	3	0	3	0	8,535	8,694	△158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14,765	14,072	693
농업기술센터	1	1	3	0	3	0	5,286	6,405	△1,119
건설본부	1	1	2	1	1	0	19,306	12,195	7,111
낙동강관리본부	1	2	5	0	5	0	17,624	21,196	△3,572

2)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과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작성기준”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위사업과의 관계에서 대표성은 물론 예산의 크기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비중이 큰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과목표와 무관한 지표가 설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를 사용할 때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족도 설문조사 시 표본 선정이 모집단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조사가 설계되어야 하며 설문조사자는 객관성을 보유한 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조사 설계에도 불구하고 표본에 한계가 있다면, 조사결과를 성과달성도 측정에 사용할 때 상응하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나 중장기 계획, 유사사업, 전국수준에 비추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목표치 설정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실적치를 목표치 만큼 표시하고, 차후년도에도 유사한 목표치 만큼만 잡아 전기대비 안정적으로 증가되도록 하는 관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국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실제 달성하였는지, 목표치를 실제치로 수정하여 작성되지 않았는지, 전략 목표와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간의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적절히 검토되고 있지 않는 등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운영 및 작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하여 각 실국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검토를 수행하거나, 각실국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 성과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